##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안내

- 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 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- 2.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90일 동안(이하'반환청구기간'이라 함)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대학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학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- 3.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붙임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(별지 제3호 서식)]를 작성하여 팩스 02-737-8431 또는 이메일 insa@baewha.ac.kr로 제출하며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지원자(수신자)가 부담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4. 대학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청구기간의 말일(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후)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
붙임 :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

##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
청구인	성명		수험번호	
주 소		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		
	I			
반환청구서류				
	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반환을 청구합니다.	제11조 및 같은 [	벜 시행령 제2조 및	제4조에 따라 위와 같
				년 월 일
		청구인		(서명 또는 인)
배화여자대학교 총장 귀하				

## 공지사항

- 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